

“식물검역 수출용 목재포장재 열처리 관련 소식”

본 란에 소개되는 “수출용 목재포장재 열처리 관련 소식”은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www.npq.s.go.kr)의 내용 중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 편집자 주 -

차 례

열처리 관련 주요내용

- I. 한국산 목재포장재에 대한 중국 측 광고 내용(보도자료)
- II. 목재포장재에 대한 국제적 규제 현황 및 전망
- III. 우리나라산 목재포장재에 대한 각국의 규제 내용 요약
- IV. 목재포장재 열처리검사 처리절차 세부요령
- V. 목재포장재 식물검역 관련 질문/답변 사례
(출처: 국립식물검역소)
- VI. 목재포장재 열처리시설 검사증명 업체 현황
(2002.3.31현재 119개사): 홈페이지 참조
(www.npq.s.go.kr,/ www.kopal.or.kr)

1. 한국산 목재포장재에 대한 중국 측 광고 내용(보도자료)

제 목: 중국 정부는 한국산 목재포장재에 대한 긴급검역조치 시행

- 중국 정부는 2002.2.20.부터 한국산 화물의 목재포장재(침엽수)에 대하여 열처리한 것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키로 하였다고 밝혔다(2002. 1. 20.)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물포장재용 목재로 “소나무재선충”의 기생이 우려되는 침엽수 목재는 사용하지 못 하며, 이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열처리(중심온도 56℃에서 30분간 처리) 또는 중국 정부가 인정한 소독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 한국검역기관은 수출식물검사합격증명서에 소독처리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중국검역기관의 감독하에 포장재를 분리하여 해충 제거 처리하고, 분리할 방법이 없으면 화물과 함께 처리되며, 처리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화물과 함께 반송 조치하고, 처리 비용은 수입상이 부담하여야 한다.
- 침엽수 목재 포장재이외의 기타 포장재도 중국 수입업체가 『비침엽수 목재포장 사용증명서』 또는 『목재포장 무사용증명서』를 첨부제시 해야한다.

그동안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에서는 식물검역관련 국제기구인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기준 제정에 대비하여 2002. 1. 19 일자로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 규정(식검고시 002-1호)”을 제정 고시하고, 이를 관계기관 및 수출업체 등에 널리 알리는 등, 수출상대국이 목재포장재에 대해 열처리를 요구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준비를 해온 바 있다.

- 금번 중국측의 조치로 인해 2. 20.부터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출항하는 소나무·낙엽송 등 침엽수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는 열처리 등의 검역조건이 부과되고, 식물검역소의 수출검사 합격증명서에 열처리 사실을 부기하는 등 수출업체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II. 목재포장재에 대한 국제적 규제 현황 및 전망

1. 목재포장재에 대한 국제적 검역 실시 배경

- 화물의 수송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통상적으로 식물검역 대상이 아니지만 가공이나 소독처리를 하지 않은 생목재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래병해충이 함께 묻어 유입될 가능성이 많은 품목임.
- 이 때문에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검역 선진국가에서는 일찍부터 목재포장재를 식물검역 대상으로 지정하여, 자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사용된 모든 목재포장재에 대해 MB훈증 등의 소독처리를 요구해 왔음.
- 또한 EU,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도 목재포장재를 통해서 소나무재선충이나 유리알락하늘소와 같은 중요한 병해충이 유입되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해당 병해충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산 목재포장재에 대해 검역조치를 요구하게 되었음(표1. 우리나라산 목재포장재에 대한 각국의 검역요건 참조).

2. 목재포장재의 검역에 관한 통일된 국제기준 제정 필요성 대두

- 목재포장재를 통한 병해충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개별적으로 검역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목재포장재를 검역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지침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FAO 산하의 식물검역관련 국제기구인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사무국에서는 2000년도부터 목재포장재의 검역에 대한 국제기준 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2000. 6월 및 2001. 2월, 2차례에 걸친 목재포장재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목재포장재의 검역적 규제를 위한 국제기준(안)을 마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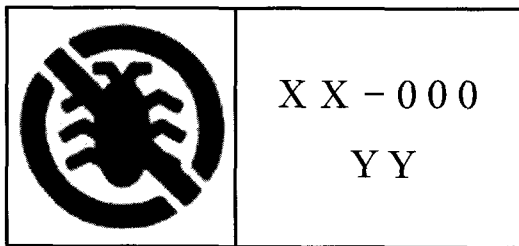
3. 목재포장재에 대한 IPPC 국제기준(안)의 주요 내용

- 규제 적용 대상
 - 침엽수 목재포장재와 비-침엽수 생목재 목재포장재(짐갈개 포함)
 - 합판,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베니어 등의 가공품과 톱밥, 대패밥 등은 적용제의

○ 요건

- 목재포장재는 수피가 제거된 나무로 제작되어야 함.
- 다음 중 한가지의 소독처리를 실시하고 포장재에 아래의 증명표식을 부착
 - 목재 중심부의 온도 56℃에서 30분간 열처리
 - MB 훈증

온도	약량	최소농도(g/m³)			
		0.5hr.	2hr.	4hrs.	16hrs.
21℃ 이상	48	36	24	17	14
16℃ 이상	56	42	28	20	17
11℃ 이상	64	48	32	22	19



XX : ISO의 2자리 국가코드

000 : 식물검역소가 부여한 고유번호

YY : 적용된 조치에 대한 약어(HT 또는 MB)

○ 요건 불이행시의 조치

- 다음과 같은 경우 소독, 폐기(소각, 매립, 가공 등) 또는 반입금지 조치
-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표식이 없거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었음이 발견
-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표식이 있으나 살아있는 병해충의 증거가 발견

4. 향후 전망

- 목재포장재에 대한 IPPC 국제기준은 제4차 ICPM회의(2002. 3월)에 상정되어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됨.
- 현재까지는 국가별 검역요건이 상이하나, IPPC 차원에서 국제기준이 채택되면 동 기준에 따라 통일된 규제조치 사용이 장려될 것으로 전망됨.

III. 우리나라산 목재포장재에 대한 각국의 규제 내용 요약

	대상품목	검역 요건	비고
미국	목재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피가 없고, 미가공 목재류가 아닌 물품에 사용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피 및 살아있는 병해충이 없음을 증명 ○ 수피가 없고, 미가공 목재류에 사용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피 및 살아있는 병해충이 없으며 소독하였음을 증명 ○ 수피가 남아있는 경우, 열처리 리(71℃/75분), MB혼증, 화학적 방부처리 중 한가지를 실시하고 증명서 첨부 	
캐나다	목재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처리되지 않은 경우 수피, 병해충, 살아있는 병해충의 흔적이 없어야 함. ○ KD(52℃이상, 수분 20%이하), 혼증(MB, Sulphuryl fluoride) 또는 화학적 방부처리 한 경우 이를 식물위생증명서에 부기 	
EU	침엽수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피와 벌레구멍이 없고 수분함량 20% 이하 	
호주	목재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중 한가지를 실시하고 식물위생증명서나 소독증명서에 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증(MB, Sulphuryl fluoride) - 열처리(74℃ 이상/처리시간은 두께에 따라 다름) - 화학적 방부처리 	
뉴질랜드	목재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전 21일 이내에 다음중 한가지를 실시하고 식물위생증명서나 소독증명서에 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증(MB, Sulphuryl fluoride, 인화수소) - 열처리(70℃ 이상/처리시간은 두께에 따라 다름) - 화학적 방부처리 	
중국	침엽수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처리(56℃/30분) 또는 기타 승인된 방법으로 소독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부기 	2002. 2. 20
핀란드	침엽수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중 한가지를 실시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피와 벌레구멍이 없으며 수분함량 20% 이하 - 열처리(56℃/30분) - KD처리(수분 20%이하) - 적절한 소독제로 혼증 	2000. 5. 31
오스트리아	활엽수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피, 벌레구멍 없으며, 수분함량 20% 이하로 KD 처리 	2001. 9. 1.
브라질	목재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적 전 15일 이내에 MB 등으로 혼증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부기 	2000.초
러시아	목재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2000. 1. 1

IV. 목재포장재 열처리검사 처리절차 세부요령

목재포장재열처리검사 처리절차 세부 실시도

1. 목적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사 처리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목재포장재의 검역업무를 일관성있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함

2. 처리절차 세부요령

가. 열처리 소독작업 결과서 접수

1) 열처리 소독작업 결과서(식검고시 제2002-1호 별지 제4호서식)는 목재 중심부 온도 자동기록표를 첨부하여 열처리 건별로 접수한다.

2) 열처리 품목별 수량 확인

열처리 건별로 품목별(파레트, 나무상자, 판재, 각재 등) 수량을 확인하되 파레트 등 완제품인 경우에는 개단위로 하고, 반제품(단순조립으로 완제품 제작 가능)일 경우에는 완제품 조립예정 개단위로, 각재, 판재 등 원자재일 경우에는 전체 단위수량(m³, 또는 재 등)으로 기재한다.

나. 열처리 표지확인서 발부

수출용 목재포장재 열처리 규정(이하 “열처리 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열처리 건별로 열처리 표지확인서를 발부하여 목재포장재에 열처리 표지토록 한다.

다. 목재포장재 열처리 관리대장 정리

지. 출장소장은 관할구역의 열처리 시설자별로 품목별(파레트, 나무상자, 판재, 각재 등)로 목재포장재 열처리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 (서식1)을 비치하고 처리수량에 대한 수출업체별 공급량(수출량)과 재고량을 기록 유지한다.

라. 수출식물 검사신청서 접수 및 처리

1)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사는 수출입업자 또는 열처리 시설자 등으로부터 검사신청서를 받는다.

2) 검사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해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 시설자가 처리한 열처리 소독작업 결과서 사본과 원자재 소요량 확인서(판재, 각재 등을 사용하여 나무상자 등을 만든 경우) (서식2)를 첨부토록 하고 민원접수증을 교부한다.

마. 목재포장재 검사 등

1) 열처리 시설이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가) 식물방역관은 수출검사신청서 수량과 열처리 소독작업 결과서(사본)을 관리대장과 대조하여 확인한다.

나) 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열처리 시설자의 목재포장재 열처리 재고량이 검사신청 수량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합격 처리한다.

다) 합격 처리한 식물방역관은 관리대장을 정리하여 재고량을 기록한다.

라) 열처리 식물상태별 수량 확인 방법 등

○ 파레트, 나무상자 등 완제품과 단순조립으로 완제품이 제작가능한 반제품(와이어통 등)은 개단위로 공급량과 재고량을 정리 확인한다.

○ 판재, 각재 등 원자재의 경우는 원자재 소요량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재고량을 정리한다.

2) 열처리시설이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경우

가) 지·출장소장은 당해 포장재를 열처리한 시설지역의 관할 지·출장소장에게 열처리 여부를 붙임 서식3에 의해 FAX 또는 E-mail 등으로 확인 의뢰하고 확인 결과에 의거 처리한다.

나) 목재포장재 열처리 확인을 요구받은 지·출장소장은 비치하고 있는 당해 열처리시설자의 관리대장을 확인하여 결과를 FAX 등으로 붙임 서식4에 의거 통보하고 합격 수량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바. 분할신청할 때 등의 조치사항

지·출장소장은 1회 열처리한 전체 수량을 일시에 수출하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열처리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열처리되지 아니한 제품과 구별이 되도록 적재토록 한다.

사. 열처리시설 확인 점검

지·출장소장은 관내 검사확인된 열처리 시설에 대하여 열처리 규정 제8조에 의거 시설 상태, 열처리 표지의 적절성, 관리대장과 재고량, 처리한 제품과 처리되지 아니한 제품이 분리 적재, 열처리 표지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한다.

아. 검사결과 처리

관리대장에 의한 서류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 처리한다.

자. 기타사항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입식물검역처리 세부요령과 열처리 규정 등 식물검역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V. 목재포장재 식물검역 관련 질문/답변 사례(출처:국립식물검역소)

□ 한국산 목재포장재가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 금번, 중국측의 긴급조치 발표는 침엽수를 가해하는 소나무재선충이 분포하는 국가산 침엽수 목재포장재는 반드시 열처리(56℃에서 30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의 에이즈”라고도 불리는 무서운 해충으로, 캐나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의 국내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국립식물검역소와 산림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 지역에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국내 목재포장재의 대부분은 소나무재선충이 분포하지 않는 국가산 목재를 수입하여 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측에서는 국내 일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국은 2000년 1월 1일부터 미국·일본산 침엽수 포장재에 대해서는 한국산 목재포장재에 대한 긴급조치 내용과 동일한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까?

▷ 농산물 및 식물성 산물인 경우에만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때는 식물검역소의 검역을 받아 수출식물검사항격증(위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공산품 등의 수출시 포장재로 사용하던 목재포장재는 식물성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입국에 따라 수출식물검사항격증(위생증)을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기준(FAO, IPPC)으로 모든 목재포장재에 대한 식물검역 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중에, 최근 중국측에서 2002년 2월 20일부터 출항하는 한국산 침엽수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수출품은 목재포장재의 열처리 사실을 부기한 수출식물검사항격증(위생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엽수 목재포장재를 사용한 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에 목재포장재 열처리 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 검사항청서(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4호서식)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여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 목재포장재란 무엇입니까?

▷ “목재포장재”라 함은 파레트·나무상자·받침목·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합니다.

다만, 합판·파티클보드·배향성스트랜드보드·베니어 등과 같이 나무 재질로 되어 있으나 접착제 열압착 등의 가공처리 공정을 거쳐 병해충이 제거·사멸된 것과 톱밥·목모(wood wool)·대패밥 등 그 성질상 병해충의 부착가능성이 없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목재포장재가 포함된 물품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2002년 2월 20일부터 출항하는 모든 대중국 수출품의 침엽수 목재포장재는 식물검역소에서 발급한 수출입식물검사항격증(열처리된 것임을 입증)이 없이는 중국측 검역당국에 의해 통관지연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중국측의 발표에 의하면 열처리되지 않은 침엽수 목재포장재는 상품과 분리 후 해충제거를 위한 처리가 될 예정이며, 상품과 분리하기 어려운 것은 상품과 함께 처리가 되며, 이와 같은 것이 불가능할 때는 상품과 함께 반송처리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도착항에서 열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이 반송될 것으로 예상되니 열처리 되지 않은 침엽수 목재포장재가 수출되었을 경우 이를 분리해체하고 중국산 포장재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중국 수입업체와 협조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 통상적으로 시행되던 MB훈증처리는 중국측으로부터 검역조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측의 갑작스런 조치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재 식물검역소에서는 관련업체의 협조를 받아 빠른시일내에 충분한 열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증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국측에 유예기간 연장과 여러나라가 인정하고 있는 『MB훈증』을 수용해주도록 외교적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측과의 협의결과 『MB훈증소독』이 허용될 경우 신속히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물검역소에서는 목재포장재 열처리 관련 전담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책마련중에 이사회이며, 현재 국립식물검역소에서 지정 고시한 열처리 기준 수준으로 국제공인기준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바, 관련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 목재포장재 열처리 관련 식물검역 절차가 궁금합니다.

- ▷ 목재포장재 열처리는 수출용 목재포장재 열처리 규정(식검고시 2002-1호)에 의거 열처리 시설 검사를 신청하여 국립식물검역소(본소)의 “열처리시설 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은 열처리 시설업체에서 목재포장재를 열처리(56°C에서 30분간처리)한 결과(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를 첨부하여 수출자가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작성, 가까운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에 신청하면 서류확인을 거쳐 수출검사합격증명서(위생증)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MB혼중 처리만으로는 수출이 불가능 한가요?

- ▷ 현행 통상적으로 실시하던 목재포장재의 MB혼중처리는 2002년 2월 20일 출항하는 것부터는 중국측의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상되는 중국측의 검역조치는 다음과 같으며, 어떤 경우라도 통관지연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가. 열처리되지 않은 침엽수 목재포장재는 상품과 분리 후 해충제거를 위한 처리
 - 나. 상품과 분리하기 어려운 것은 상품과 함께 처리
 - 다. 상기 방법이 불가능할 때는 상품과 함께 반송처리
 - 라. 상기 처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수입상이 부담
(※ 이중 다 항의 처분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와 관련하여 현재국제적으로 인정하는 『MB 혼중소독』을 제시하고 이를 허용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측과의 협의결과 『MB 혼중소독』이 허용될 경우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한국파렛트협회 및 수출협회 등에 신속히 홍보해드릴 계획입니다.
- ▷ 다만, 중국이외의 국가(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등)로 수출되는 목재포장재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MB혼중 처리로도 수출이 될 수 있습니다.

□ 열처리를 하지 않은 중국 수출품의 경우 어떤 조치를 받게 됩니까?

- ▷ 중국측의 발표에 의하면 침엽수로 만든 목재포장재의 경우에는 중심부가 56°C에서 30분간 열처리되어야하고 한국 식물검역소에서 발급한 수출검사합격증명서(위생증)이 있는

것에 한해서만 수입이 허용됩니다.

만약, 열처리하지 않고 수출된 침엽수 목재포장재의 경우 예상되는 중국측의 검역조치는 다음과 같음. 어떤 경우라도 통관지연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이중 주로 다 항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가. 열처리되지 않은 침엽수 목재포장재는 상품과 분리 후 해충제거를 위한 처리

○ 포장재를 제외한 본 물품은 통관가능

나. 상품과 분리하기 어려운 것은 상품과 함께 처리

○ 해충제거 처리후(중국측이 지정하는 처리방법) 통관가능

다. 상기 방법이 불가능할 때는 상품과 함께 반송처리

라. 상기 처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수입상이 부담

□ 침엽수가 아닌 다른 수종의 목재 포장재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 중국 수출 상품의 목재포장재중 침엽수가 아닌 목재로 만든 목재포장재는 열처리 등 다른 처리가 필요 없으며 식물검역소의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자가 『비침엽수 목재포장재 사용증명서』 또는 『목재포장재 무사용 증명서』를 발행하여 중국측 수입자에게 송부하면 중국측 수입자가 중국 식물검역 당국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 양식과 관련한 중국측의 언급은 없으나 중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포장재의 경우 미국정부에서 대중국 수출업자들에게 비침엽수 목재포장재 사용 또는 목재포장 무사용시 동사항을 송장(Invoice) 그리고/또는 BL에 표시함과 동시에 아래 양식의 증명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Declaration of non-coniferous wood packing material

To the Service of China Entry & 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It is declared that all wood packing materials in this

shipment_____commodity_____quantity/weight are made of non-coniferous trees.

Name of Export Company: (Stamp or Signature of Director)

Date:-----

□ **부피가 큰 포장재를 만들기 전에 재료자체를 열처리한 것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는 완제품(파렛트, 나무상자 등) 또는 반제품(단순 조립만으로 완제품이 가능한 경우), 부피가 큰 포장재의 경우 부분 제작 상태의 반제품, 원자재 등에 대해 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물검역소(지·출장소)가 제시하는 대로 원자재 등은 열처리 후 완제품을 만들 때까지 열처리 되지 아니한 물품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완제품 제작시 열처리 당시의 원자재량과 확인될 수 있는 관리(수불)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 **중국 수출품 목재포장재 이외에 다른 나라 수출용 목재포장재도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까?**

▷ 중국이외의 국가로 수출되는 목재포장재의 경우는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식물검역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합니다.

□ **열처리 시설을 갖추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열처리시설자는 열처리시설 요건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식물검역소(본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출용 목재포장재 열처리 규정(식검고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번호 : 031-441-6982

※팩스 번호 : 031-448-6429, 447-0525

□ **열처리 시설 검사 확인 신청 후 최종 확인까지의 기간은?
팩스 신청도 가능한가요?**

▷ 현행 열처리 시설 검사확인시 식물검역소의 현장확인에 걸리는 시간은 20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요건에 맞는 시설 및 서류를 구비하시는 것이 최종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33-1 국립식물검역소 방제과

전화 : 031-441-6982

팩스 : 031-448-6429, 447-0525

□ 현재 허가된 열처리 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www.npqis.go.kr) 및 (사)한국파렛트협회 홈페이지(www.kopal.or.kr) 참조..(2002.3.31현재 119개사)

□ 열처리 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설비업체를 소개해 주세요?

▷ 현재 알려져 있는 설비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식물검역소 열처리시설 요건에 맞는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업체면 어느 업체라도 가능합니다.

NO	설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주) 건조기술	광주	062-602-7524	
2	(주) 뉴그린	경기 화성	031-354-3100	
3	그린토피아	경남 진주	055-745-6467	
4	(주) 두성엔지니어링	부산	051-325-8996	
5	미진산업주식회사	경기 안산	031-498-8233~6	
6	삼보종합기계	서울	02-468-8880/8888	
7	(주) 카오스	경남 진주	055-759-0165~6	
8	태양기계공업	경남 함안	055-583-8567	
9	한국건조기	인천	032-578-9755	
10	한진수출포장	경기 안산	031-497-0345	
11	범양공조산업(주)	서울	02-3453-7777	
		대구	053-761-7777	
		음성	043-883-7776	
		안양	031-455-7477	

□ **국립식물검역소는 대체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 국립식물검역소에서는 식물검역관련 국제 기구인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목재포장재 열처리 관련 기준제정 움직임에 사전 대비하여 이미 2001년 7월부터 관련연구를 수행하여 열처리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관련업체,협회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 규정(식검고시 제2002-1호(2002. 1. 19.))”을 제정·고시하고, 이를 관계기관 및 수출업체등에 널리 알리는 등, 수출상대국이 목재포장재에 대해 열처리를 요구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준비를 해온 바 있습니다.

이번 중국측의 이례적인 긴급 검역강화 조치에 대해 외교적 대응을 하는 것과 함께 식물검역소에서는 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시설 검사확인을 신속히 실시하고 열처리 포장재를 중국 수출용으로 우선 사용토록 지도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목재포장재 제작업체에서는 국립식물검역소의 시설 확인을 받아 열처리를 하게되면 열처리 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위생증(PC)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식물검역소는 외교적으로 한·중 식물검역기관간의 협의체제를 더욱 강화함은 물론 관련 전담 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책마련중에 있사오며, 현재 목재포장재와 관련한 국제적인 추세가 현재 국립식물검역소에서도 지정 고시한 기준과 동일한 열처리 기준을 국제공인기준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바, 관련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 **목재포장재 관련 향후 전망은?**

▷ 식물검역관련 국제 기구인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서는 현행 국가별로 다른 목재포장재 관련 검역기준을 통일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에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제4차 ICPM회의에서 금번 식물검역소에서 제정한 바 있는 열처리 규정(목재중심온도 56℃에서 30분간 지속)과 MB훈증을 국제공인 기준으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으며, 동 기준이 채택되면 각 국가간에 통일된 규제조치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현재 소나무재선충 분포국가산 목재의 경우 열처리를 선호하는 추세인 점으로 비추어 볼 때 국내산 목재포장재의 경우에도 각국에서 열처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침엽수 목재포장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종분석은 어느 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가?**

▷ 현재 목재류에 수종분석이 가능한 기관은 산림청산하 임업연구원이며 수종분석에는 육안검사, 현미경적 식별방법 등이 사용되며 소요기간은 7~10일 정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임업연구원 재료공학과 : 02-9612-563

□ **선적일은 2월 19일이고, 출항일은 2월 20일인 경우에도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까?**

▷ 중국측 공고내용에 의하면 '2002. 2. 20. 수출국(한국)의 항구를 떠난' 것부터 중국의 검역규제조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적은 2월 20일 이전에 했더라도 출항일이 2월 20일인 경우 침엽수로 만든 목재포장재는 반드시 열처리 되어야 하고, 열처리된 사실이 위생증에 부기되어야 합니다.

□ **컨테이너별로 수출식물검사 합격증을 받을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 수출식물검사합격증(위생증)은 컨테이너별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B/L별로 발급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개수가 많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 식물검역소에서는 목재포장재인 경우 수출검사합격증발급은 현장확인검사 없이 제출서류 검토만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 **1회 열처리한 목재포장재를 분할하여 수출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열처리시설 검사중명업체(열처리시설자)는 매 처리시마다 그 작업결과보고서를 관할지·출장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에서는 회사별·품목별로 열처리 목재 포장재 수불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열처리시설자로부터 해당 포장재에 대한 '열처리작업결과보고서' 사본을 받아 수출식물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 가까운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에 제출하면 열처리 목재포장재 수불대장을 확인하고 처리된 수량내에 해당될 경우는 건수와 관계없이 분할 합격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 **긴급 수출오더 또는 항공화물 수출시 수출식물합격증(위생증) 발급에 필요한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통관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 식물검역소에서는 수출검사신청서를 E-mail 또는 FAX로도 접수하고 있으며, 전화 등으로 미리 통보하시면 검사증명서 찾으러 오는 시간 내에 발급하여 드리며,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 **열처리는 구미에서 하였지만, 수출검사신청은 서울에서 할 수 있습니까?**

▷ 목재포장재는 열처리한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가까운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에 수출검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당해 목재 포장재가 열처리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열처리시설자로부터 발급 받은 '열처리작업결과보고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식물검역소에서는 목재포장재 수출검사신청시 현장 확인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서류 검토만으로 수출식물검사합격증(위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VI. 목재포장재 열처리시설 검사증명 업체 현황(2002.3.31현재 총119개사)
:홈페이지 참조(www.npqg.go.kr, www.kopal.or.kr)

목재포장재 열처리시설 검사증명 업체 현황(2002.3.31현재 회원사:총22사)

확인번호	상호명	열처리 시설자	주 소	전화번호	내용적 (입방)	비고
KR-001	(주)진성산업	홍진기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4동 299	032)575-7600	128.0	1/30
KR-002	(주) 뉴그린	구원희	경기 화성시 향남면 길성리 476-1	031)354-3100	534.8	2/2
KR-003	(주)신홍목재 산업개발	구자만	경기 평택시 세교동 463-4	031)652-6643	148.8	2/2
KR-012	(주)청구파렛트	김종환	전북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828-1	063)464-9830	140.0	2/9
KR-013	(유)연일목재	강운석	전북 군산시 구암동 272-3	063)442-5626	153.8	2/9
KR-015	두성목재건조	장동현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717-5	051)325-8996	636.0	2/9
KR-022	(주)전일목재산업	김병진	전북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500	063)545-3131	180.0	2/13
KR-030	(주)신홍목재포장	구자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47-3	043)233-1903	120.9	2/20
KR-035	(주)신홍목재포장 광주공장	구자만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273-11	062)955-0245	148.8	2/23
KR-041	(주)중동	차희철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134	032)575-4021	140.4	2/26
KR-048	동양목재(주)	김태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59	032)578-8121	240.0	3/2
KR-051	(주)한성목재	구재본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180-459	031)222-1251	140.0	3/5
KR-061	경주수출포장	정덕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33	032)508-4230	211.2	3/8
KR-062	대한수출포장	김용필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60-11	031)498-8951	45.8	3/8
KR-066	진흥기업	최태식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460-5	031)982-2966	72.0	3/9
KR-075	(주)광덕파렛트	윤중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2라 603	031)499-0855	98.0	3/13
KR-076	(주)동강	박철주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949-1	052)271-2311	50.4	3/16
KR-085	(주)신홍목재송탄 공장	구자만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450-2	031)665-0891	148.8	3/19
KR-086	영림목재(주)	이경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49-1	032)811-9331	144.0	3/19
KR-089	(주)한성목재	구재본	경북 경주시 외동읍 죽동리 650	054)772-1252	110.0	3/21
KR-100	우진포장해운(주)	전인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163B-4L	032)822-4215	110	3/25
KR-111	한성목재공업(주)	최정중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2-3	032)577-1530	124	3/30